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도입 등〉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67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2216667)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도입(안 제2조 등)	5
2.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일치 여부 확인 근거 및 과태료 신설(안 제19조의4 등)	18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221666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9.
3. 회 부 일 : 2026.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종사자의 명의 도용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자격 확인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며, 사업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배달종사자는 적정배달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속 등 위험한 배달환경에 내몰리고 있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 시스템 역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생체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해당사자

들이 심의·의결하는 적정배달료를 도입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5 신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에 더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함(안 제19조의4제1항).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지문·홍채·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3항).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조의4제4항).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

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의4제5항).

5)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및 생체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9조의4제6항).

6) 본인 일치 여부 확인 후에도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9호의5).

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0까지 신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정의함(안 제2조제8호).

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 종사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적정배달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7).

3)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는 운송수단의 유지·관리·운영 비용, 종사자 노무비 등 비용과 종사자의 시간당 배달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8).

- 4)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의결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공표된 적정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의9).
- 5)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등의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의10).

Ⅲ. 검토의견

1.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도입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배달료인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도입하고(안 제2조),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결정 및 조정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를 설치하며(안 제19조의7),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공표하고(안 제19조의9)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의 지급 및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10).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u> ”란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배달료의 보장을 통하여 과</u>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u><신 설></u>	<u>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제19조의7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9조의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배달료를 말한다.</u>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u>제3장의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제19조의7(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1.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u>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u> <u>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대표하는 위원</u> <u>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u>

현행	개정안
<신 설>	3. <u>생활물류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u> 4. <u>공익을 대표하는 위원</u> ③ <u>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들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u> ④ <u>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9조의8(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심의기준) ①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의결한다.</u> 1. <u>운송수단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u> 2.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비용</u> 3.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u> 4. <u>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평균적인 배달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u>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시간당 적정배달 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의9(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및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생활물류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택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모든 화물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품목 ②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적정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10(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의 지급 및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신고를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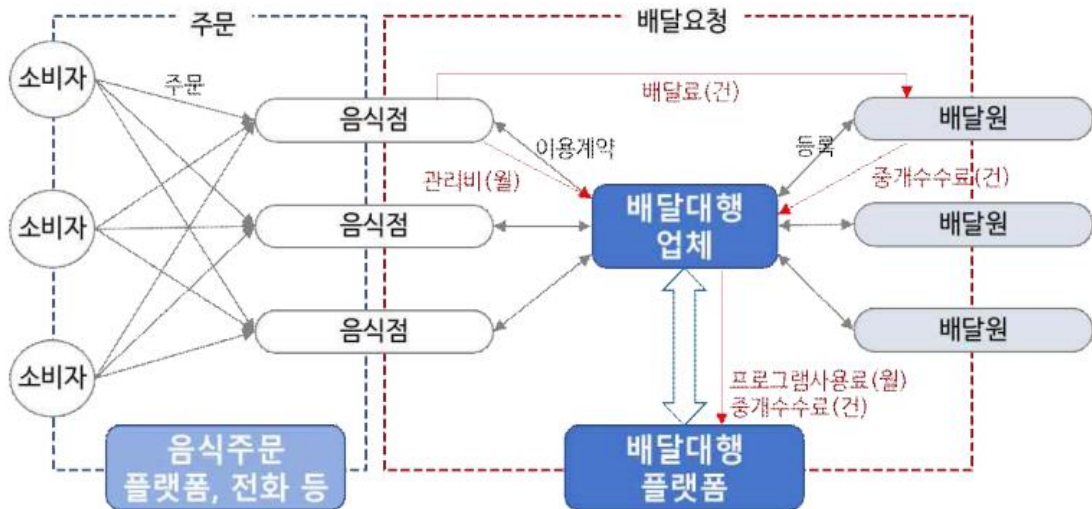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u>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는 이륜차를 기반으로 음식물 등 근거리 배송을 수행하는 배달대행업과 서류 등을 빠른 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커서비스업이 포함되며,¹⁾ 대표적으로 음식 배달대행의 경우 음식점, 배달대행업체, 배달대행플랫폼, 배달종사자 간 이해관계 구조에서 배달료가 결정되고 있음.

1) 장소영·이지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1.7.

【 배달대행 사업 기본유형 】



자료: 장소영·이지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1.7.

고객이 주문중개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이 배달대행 업체에 배송을 의뢰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송기사에게 다시 배송을 의뢰하는 구조로, 이에 따라 음식점 자영업자는 배달대행업체에 가맹비를 내고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달종사자는 해당 배달 건당 수수료를 수령하고 그 중 일부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로 지불하며, 배달대행업체는 플랫폼 기업에 매월 프로그램 사용료 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됨.

다만, 일부 배달대행플랫폼에서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기본 배달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등 불공정한 배달료 체계로 인해 배달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 및 과속 운행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 배달 종사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

입원인 배달료의 최소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음.²⁾³⁾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배달료를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공표된 적정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배달종사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배달료로 과속 등 위험한 배달환경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적정배달료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존재하는데, 우선 **종사자** 측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안전배달료 제도가 도입되면 ①종사자가 최소한의 기본수입을 보장받게 되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②속도 경쟁, 과로를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임.

2) 뉴시스, 「배달라이더들 ‘안전배달료 도입하라’」, 2025.7.16.

3) 물류신문, 「배달 안전운임 도입 신중론 속 “안전교육·유상운송보험 확대해야”」, 2025.3.7.

4) KBS뉴스, “운전 중 ‘불쑥’ 오토바이…‘안전배달료’ 도입 대안될까?”, 2022.5.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58566&ref=A>

한국교통연구원의 「2024 생활물류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건당 운임이 낮은 문제’와 관련된 근로환경의 어려움을 겪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배달대행 업무 수행 중 겪는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으로 ‘직선거리 계산운임(42.6%)’, ‘운임 책정 시 부피·무게 고려 부재(14.7%)’등 운임 체계와 관련된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배달종사자 근로 어려움 및 불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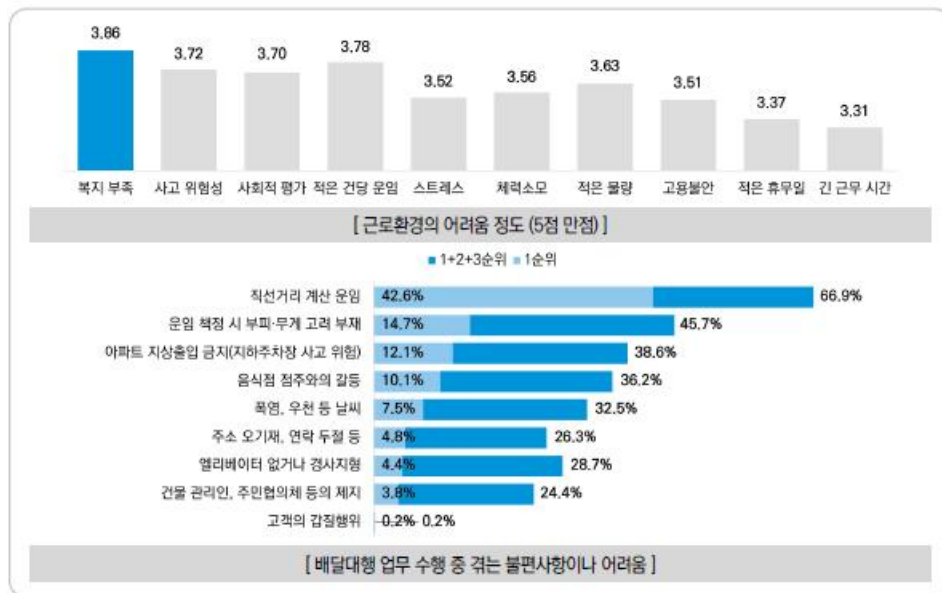


그림 3-12 근로 어려움 및 불편사항 (배달대행 종사자)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반면, 사업자 측에서는 배달 산업이 전통적 운송 산업과 달리 주문 단위가 소형·단시간·고빈도의 비중이 높고, 시간대·지역·운송수단·물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유연하게 형성되는 배달료의 특성상 동일 기준 설정이 어려우며, 배달료 인상 시 소비자 수요 감소에 따른 소

상공인 매출 및 배달 종사자 물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의 ‘적정배달료 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⁵⁾는 화물자동차 시장 종사자의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화물시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공표함으로써 최저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

구분	안전운임제
도입대상	컨테이너·시멘트 (전용 트레일러)  
공표내용	① 안전운송운임 : 화주→운송사 / ② 안전위탁운임 : 운송사→차주
공표형태	운송 1회당 운임 (거리별) * (예시) 400km 80만원/회, 1~550km 공표
시행기간	'20.1.1~'22.12.31/ '26.1.1~'28.12.31
강제성	과태료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절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2002년 도입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이후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하여 일몰제(2020. 1. 1. ~ 2022. 12. 31.)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22년 말 일몰되었으며, 이후 재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견 수렴⁶⁾ 끝에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해 일몰제로 재도입(2026. 1. 1. ~ 2028. 12. 31.)되었음.

다만, 화물시장과 달리 배달시장은 주문 단위가 작고 수요·공급이 실시간으로 변동되는데,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피크 시간대 또는 기상 상황 및 배송 난이도에 따라 단가를 조정하는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하는 등 배달료는 배달 지역, 시간대, 운송수단(이륜차·전동킥보드·자전거·도보 등), 물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유연하게 형성되며,

화물시장과 비교하여 가격 민감도가 높은 배달시장의 특성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배달서비스의 이용 감소 및 소비자 이탈로 인해⁷⁾ 소상공인과 배달 종사자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장참여자,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의견수렴이 선

6) (찬성) 안전운임제 도입 기간이 코로나-19 기간으로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안전운임제 도입 후 사고가 증가하였다는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

(반대)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에 대한 효과 불분명, 결과적으로 대형 운수사의 이윤이 보장되는 문제,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7) 아이뉴스24, 「소비자 단체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 되레 시장 망친다”」, 2025.12.12.

행될 필요가 있으며,

적정배달료의 도입은 실제 배달 시장에서의 배달료 수취 실태, 낮은 배달료로 인한 생활물류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부분적·단계적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지역·시간대·운송수단·물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유연하게 배달료가 형성되는 배달 산업의 특성, 가격 직접규제 방식으로 인한 자율적인 가격 결정 과정 저해 우려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에게 공표된 적정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안 제19조의9)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9조의9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정배달료 관련 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2027년도 적정배달료 공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최초 공표에 관한 특례를 부칙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라는 이름으로 최소 수준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098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배달료를 강제할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우려되며, 일률적인 배달료 책정은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및 혁신 동기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하며, 적정배달료의 도입이 과로·과속 및 과적 운행 방지와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개선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함. 또한 배달료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서비스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후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이해관계자 의견

1) 통합형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공동 의견

배달료는 지역, 시간대, 운송수단, 물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유연하게 형성되어 시간대별 주문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인해 기준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며, 최근 배달 산업은 기술의 발달로 배달 방식이 단건 배달에서 ‘묶음 배달(다건 배달)’로 발전하고 있는데, 개별 주문당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구조에서 건당 적정 배달료를 설정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적정배달료 도입에 따른 배달료 인상 시 소비자 수요 감소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및 배달 물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종사자의 과속 등 교통안전 문제는 적정배달료 지급보다는 운행 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통합물류협회 의견

화물 유형과 운영구조가 다변화되고,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 환경에서 운임이 형성되므로 가격 직접규제 방식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가격 직접결정 방식은 기업의 가격결정 자율성과 직업수행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한 경제규제에 해당하므로, 필요성·비례성 및 최소침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일치 여부 확인 근거 및 과태료 신설(안 제19조의4 등)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의4),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u>확인</u>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및 <u>본인 일치 여부 확인</u> 등) ① ----- ----- ----- ----- ----- <u>같다</u>) 및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u><신 설></u>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생체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⑦·⑧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 ----- -----.
1. ~ 9의4. (생략)	1. ~ 9의4.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5. 제1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5. (생략)	9의6. (현행 제9호의5와 같음)
10. ~ 15. (생략)	10. ~ 1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최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등 배달업 분야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⁸⁾ 이 과정에서 무면허 이륜차 운전 등 각종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며 내국인 배달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무자격 외국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대행 앱 이용 시 생체인식 본인확인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⁹⁾

이에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얼굴·지문·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종사자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자격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취업 문제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이용하려는 지문, 홍채, 얼굴 및 손바닥 정맥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데,¹⁰⁾¹¹⁾

8)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2026.3.9.

9) 제22대국회, 제429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11.11.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보다 높은 보호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상당한 제한¹²⁾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명의도용 방지**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이용하도록 함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지문·홍채와 같이 변화하지 않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강한 보호가 요구되는데,

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1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개정안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뿐만 아니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¹³⁾까지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게 되어 광범위하게 생체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 점,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생체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여부, 현행법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제도(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확인)¹⁴⁾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생체정보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성 및 제도적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로 「항공보안법」은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 지문, 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⁵⁾

1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

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5) 「항공보안법」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1. 공항운영자: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2.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과 같이 제한된 목적과 범위에 한정하여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운영자가 생체인식 신분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생체정보 관리를 위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생체정보가 결합된 승객정보는 발권부터 항공기 이륙 시까지만 관리·활용 후 폐기되도록 하는 등 엄격한 보호 장치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음.

나. 정부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생체정보를 배달 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배달 종사자의 운전자격 확인 절차를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에도 명의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명의도용 근절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 후 개인정보 보호 원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생체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생체정보 활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안전하게 생체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해소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

3) 경찰청 의견

「개인정보 보호법」 상 지문은 민감정보(생체정보)로 처리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 개인의 지문 취득 및 비교 체계를 시장에 맡길 경우 영세한 영업자에게는 높은 품질의 정보보호 체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지문 정보의 유출·복제 등이 일어날 경우 사회적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차원의 제도·시스템 구축·운영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3. 이해관계자 의견

1) 통합형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공동 의견

생체정보를 상시 수집·처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보안 인프라,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함. 배달 라이더는 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의 전 과정이 개인 단독 수행 행태로 이루어지므로 인증절차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배달 수행주체가 동일인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어렵고,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방식이 기술적으로 우회가 가능한 만큼 명의대여 문제가 음성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2) 배달플랫폼(바로고) 의견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위험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유출 또는 오·남용 시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게 생체정보의 처리 및 파기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구조는 기술적·관리적 부담과 함께 과도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